

우편번호 : 10390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1105호

홈페이지 : <http://www.kihs.re.kr>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장애인기업 대상]

- 공 고 명: [재공고]영상분석 프로그램 구매
- 견적서접수개시: 2026.09.11.(금)
- 견적서접수마감: 2026.09.17.(목) 10:00
- 개 찰 일 시: 2026.09.17.(목) 11:00 이후
- 수 요 기 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 견적제출(입찰)자는 참가자격(장애인기업 등), 규격서나 공고문에 명시된 물품 규격, 성능, 품질을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제조납품 또는 제조사나 대리점, 총판 등으로부터 물품수량을 확보하여 우리 기술원에 납품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 공고서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집행하는 견적제출 공고에서 견적제출자(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견적제출 공고, 개찰 등 계약 관련: 기술원 경영지원실 박형재(☎ 031-929-0992)
- 규격 관련: 기술원 영산강권역실 유영무(☎ 031-929-0849)

* 규격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이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고서를 구성하는 다음의 각종 규정, 규격서, 과업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재정경제부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재정경제부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7. (조달청 훈령)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8.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9.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10.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1.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계약업무요령
12. 기타 청렴서약서, 규격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기술원 내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https://www.alio.go.kr>/기관별공시/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 본 견적제출(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과 경합할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경합하지 않을 경우 상호보완하여 적용됩니다.
-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9.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경영지원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공고개요

- 공 고 명: 『**재공고**』영상분석 프로그램 구매』
- 계 약 방 법: 소액수의(장애인기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2인 이상 전자견적제출)
- 투 찰 방 식: 총액견적(입찰), 전자견적(입찰)
- 견적서접수: 2026.09.11.(금) ~ 2026.09.17.(목) 10:00
- 개 찰 일 시: 2026.09.17.(목) 11:00 이후
- 낙찰자결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 기 초 금 액: 금12,100,000원(금일천이백일십만원) / VAT 포함
- 추 정 가 격: 금11,000,000원
- 목 적 물: 영상분석 프로그램 1년 임대(세부조건은 규격서에 따름)
- 납 품 기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납 품 장 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지정장소
- 공 동 계 약: 불가

※ 물품과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과업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서 견적제출(입찰) 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입찰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1. 견적서 제출(입찰) 및 개찰 일시

- 1) 견적서(입찰서) 접수개시일자: 2026.09.11.(금)
- 2) 견적서(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09.17.(목) 10:00
- 3) 견적서(입찰서) 개찰일시: 2026.09.17.(목) 11:00 이후
- 4) 견적서(입찰서) 제출방식: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 5)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계약담당자 PC)

- ▶ 견적서(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입찰서) 제출 방식

- 1) (총액입찰)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신원확인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3) (안전입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4) (지문인식)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입찰) 참가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4323260501)]의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령」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서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① 장애인기업 확인서는 견적서(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② 장애인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재된 자료로만 확인하고 개찰일 전일이 유효기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③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전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건적제출(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참가자격을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전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전자전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투찰 가능 여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에 해당할 경우 건적제출(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췄을 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 전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가격입찰서로 같음)

3-1. 건적서 제출(입찰) 참가자격 등록

-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2) (등록기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2. 건적서 제출(입찰) 참가자격 관련 제출서류

- 1) 건적서 제출(입찰) 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건적서 제출(입찰) 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참가자격이 없으며, 사전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이와는 별도로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조달등록정보와의 대조, 입찰무효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계약담당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5.건적서 제출(입찰) 무효 참조)**

3) 낙찰예정자가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건적제출 공고에 참가한 경우 제출서류

-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팩스 전송 시 반드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또한, 규격서 등 에서 납품과 관련된 서류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추가 서류제출이 동반될 수 있으니 공고문과 별첨의 규격서, 과업서 등을 면밀히 확인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선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본 구매건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건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건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선순위 건적서 제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① 건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②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③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④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건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 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건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 ⑥ 건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기술원과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3) 예정가격

- ① 본 건적제출(입찰)공고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pm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② 동 건적제출(입찰)공고는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며, 전자전적서제출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

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③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본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④ 견적서제출자(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견적서(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4)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5) 견적제출(입찰)공고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별도 통보는 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찰금액 기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입찰)은 무효입니다.
- 2) 무효견적제출(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서(입찰서) 제출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안내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입찰)공고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②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서(입찰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 3)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로 간주합니다.
- 4) 계약담당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무효견적제출(입찰)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일자 내 낙찰예정자가 참가자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 낙찰예정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계약보증금

- 1)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및 기술원 계약업무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2) 계약보증의 규모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가액으로 합니다.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불허

원활한 장비 납품 및 A/S 등 사후관리를 위해 공동수급(컨소시엄) 방식의 입찰을 불허합니다.

8. 물품 구매(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 의무 안내

- 1) 기술원은 물품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준용,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2)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기술원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불입 참조)**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계약상대자는 기술원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불입 참조)**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안내사항

- 1) 견적입찰 낙찰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견적입찰 낙찰자(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체)는 수요기관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별지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 또한, 견적입찰 낙찰자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각호에 해당되거나 「조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응답 시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초안이 발송되더라도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0.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안내

기술원은 2024.05.03. 이후 계약서 작성분부터 인지세를 다음과 같이 공동부담하오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 (일반기업) 기술원-계약자 50% 균등 부담
- (사회적 약자기업) 기술원이 100% 부담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본 견적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입찰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 2) 본 견적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3)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 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11.4)’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11.5)’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감함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해당사항 없음

13. 불공정행위 금지

- 1) 견적제출자(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 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 1) 견적제출(입찰)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제출(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견적제출(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 수자원조사기술원 청탁방지담당관(감사실장 김지찬 ☎ 031-929-0806)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직인생략

[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기술원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32조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32조(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기술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 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게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기술원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원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기술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대표 ○○○ (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 귀하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기술원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33조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33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술원의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기술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계약상대자는 기술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기술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대표 ○○○ (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 귀하